

주민 생활환경 조성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개정 촉구 건의안  
(김원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74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 김원태, 강석주,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소라,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유정  
의원(45명)

## 1. 주문

- 정당현수막 관련 규제의 통일성 확보와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당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으로 상향시키고 기타 관련 세부 규제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신설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당 활동 보장 위주의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조항을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함께 반영하여 헌법 정신에 맞게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함.

## 2. 제안이유

- 정당현수막에 대해 허가 신고 금지 제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2022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안 시행 전에 비해 관련 민원이 2배로 증가하고, 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정당 현수막이 국민의 생활불편과 다량의 현수막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음.
-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 『정당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마련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당현수막의 관리에 한계를 가져옴.
- 따라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특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으로 상향시키고 기타 자세한 규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을 신설하여 주민 생활안전 조성 및 보행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이송처

- 「국회」, 「행정안전부」, 「17개 시 도」 및 의회

# 주민 생활환경 조성 및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개정 촉구 건의안

2022년 12월 정당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이하 법)에 따른 허가·신고·금지·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으로 불철거 등의 특권을 부여받은 정당현수막은 정당 정책이 담긴 현수막 게시, 정당 정책 대 주민 적시 홍보 등 건전한 목적의 현수막 게시가 아닌 상대 당·후보를 단순 비방하는 혐오 조장 정당현수막으로 변질되어 난립하고 있어 이를 보는 어린이·청소년 및 시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법 개정안 시행 전 3달간 6,415건 발생한 민원에 비해 개정안 시행 후 3달간 정당현수막 관련 민원이 14,197건 발생으로 약 2배 이상 대폭 증가했으며, 정당현수막 관련 안전사고가 8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보행 안전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차원에서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행정 지도 차원의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는 바, 이를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현수막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일반시민 위에 있는 법 규정으로 인해 대한민국 곳곳에는 혐오를 조장하는 정당현수막 난립으로 주민에게 정신공해를 초래하고 보행안전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정치·정당인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입안하고 정당현수막을 통해 치적을 드높이며 상대 당 등을 비난하고 혐오를 조장하여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는 것에 그 존재의 이유가 있지 아니다.

정치·정당인은 민생을 살피고 효율적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더 안전한 사회, 더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함에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

현재의 정당현수막에 대한 특권은 우리 정치인들 스스로가 후퇴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당 편의적 규정인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조항을 하루속히 헌법 정신에 맞게 개정하고 시·도 자치단체의 의견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법령에 포함시켜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생활환경 및 안전 저해 문제를 철저히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정치문화 조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정당현수막 관련 규제의 통일성을 위해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행정안전부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되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가이드라인 중 불명확한 기준 개선을 촉구한다.

셋째, 정당현수막 관련 민원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당현수막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8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